
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박충권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72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3. 25.

발 의 자 : 박충권 · 나경원 · 유상범
이종욱 · 이인선 · 이달희
김기웅 · 박성훈 · 엄태영
김상훈 · 박수영 · 서천호
김도읍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보호 및 정착에 필요한 교육, 의료지원 및 생활보호 등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·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책 수요자인 북한이탈주민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 수렴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의견 수렴 절차가 미비하여 정책 수요자 및 전문가의 의견이 기본계획 등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특히, 통일부가 ‘탈북민’ 명칭을 ‘북향민’ 명칭으로 변경함에 있어서 당초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, 탈북민 1000명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명칭 변경에 반대하는 의견이 53.4%로 과반이 넘었음에도 명칭 변경을 강행해 논란이 되고 있음.

이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북한이탈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 수립 절차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정책의 민주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4조의3제4항 신설 등).
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3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7항(종전의 제6항) 전단 중 “제5항”을 “제6항”으로 한다.

- ④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및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고,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의3(기본계획 및 시행계획) ① ~ ③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4조의3(기본계획 및 시행계획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<u>④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및</u> <u>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</u> <u>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</u> <u>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및 관계</u> <u>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어야</u> <u>하고,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</u> <u>정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.</u>
<u>④ · ⑤</u> (생 략)	<u>⑤ · ⑥</u> (현행 제4항 및 제5 항과 같음)
<u>⑥</u> 통일부장관은 <u>제5항</u> 에 따른 추진성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 조하여야 한다.	<u>⑦</u> ----- <u>제6항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.